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이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411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안 제5조의2 신설, 제63조 삭제) ... | 3  |
| 2.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안 제5조의2) ..    | 8  |
| 3.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 명시(안 제48조의2) ...      | 11 |



## I. 개요

### 1. 이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411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주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30.

(3) 회 부 일 : 2024. 9. 2.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응급의료현장의 붕괴가 가속화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들에 대한 과도한 법적 처벌과 배상 요구에 대한 부담이 응급실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진료를 방해하고 이들의 이탈을 초래해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해결로 제시한 응급의료 거부 금지 정책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를 강제적으로 수용하게 하여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치를 어렵게 하고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부담은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현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불가피하였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과도한 처벌과 의료소송의 부담으로 인한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 또한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응급구조 활동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고 수용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無理하게 수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5조의2·제4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제63조 삭제 등)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안 제5조의2 신설, 제63조 삭제)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등의 응급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u>&lt;신설&gt;</u> | <u>제5조의2(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면책)</u><br><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이나</u><br><u>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생</u><br><u>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u><br><u>또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u><br><u>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공하</u><br><u>여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하여 그</u><br><u>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고의</u><br><u>또는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u><br><u>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그 행위</u><br><u>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br><u>1. 응급의료종사자</u><br><u>2.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u><br><u>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u><br><u>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u> |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삭 제>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응급의료종사자<sup>1)</sup>나 응급처치 제공의무자<sup>2)</sup>의 불가피한 응급의료행위로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하여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63조),

의료계의 의견에 따르면 위급한 상황에서 고위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항상 응급환자의 사상에 대한 법적 처벌과 배상 요구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진료하게 되므로, 응급실 의료진이 점차 감소하게 되어 응급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및 그 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제공하다가 환자의 사상이 발생하면,

1)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2) 고의 또는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적극적인 응급의료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응급의료 분야 의료진 등의 부담을 줄이고 이탈을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2)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방지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응급의료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전면적으로 면제시키는 유리한 방향의 개정임에도 입증책임까지 전환하여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책임을 피해자인 환자나 유가족이 지게 되는 측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참고로, 현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sup>3)</sup>에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임.

##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보다 적극적인 응급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의료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환자 측에서 명백하게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법무부)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하여 민사·형사책임을 면제하여 과도한 처벌과 의료소송의 부담으로 인한 종사자 이탈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현재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분야 종사자의 형사책임 특례방안에 대하여 주무부처에서 검토 중이므로,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료인과 환자들의 이해관계가 두루 조화된 보건의료 및 형사 정책을

3)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됨(2024년 5월).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한병원협회) 응급의료종사자의 적극적인 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에 찬성함.
- (대한의사협회) 응급의료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의료소송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응급의료종사자가 의료행위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한 면책 범위 변경이 필요함.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피해자나 유족이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 여부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중과실이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의 형사책임까지 면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2.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안 제5조의2)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일반인 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사망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 현행                                                                                                                                                                                                                         | 개정안                                                                                                                                                                        |
|----------------------------------------------------------------------------------------------------------------------------------------------------------------------------------------------------------------------------|----------------------------------------------------------------------------------------------------------------------------------------------------------------------------|
| <p>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u>사상(死傷)</u>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u>상해(傷害)</u>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p> <p>1. ~ 3. (생략)</p> | <p>제5조의3(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p> <p>-----</p> <p>-----</p> <p>-----<u>사상</u>-----</p> <p>-----</p> <p>-----</p> <p>---<u>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일반인이 한 응급처치나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의료, 즉 선의의 응급의료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나 사상(사망 및 상해)이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없으면, 행위자에 대하여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 해당 규정은 일반시민이 선한 의지로 행하는 인명구조 활동을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조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행하는 응급의료행위나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장비·기구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시행한 응급의료행위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행위자의 응급의료행위의 결과로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형사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는 점이 적극적인 구조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일반인이나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행위에 따른 환자 사망에 대하여도 형사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응급구조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국민의 적극적인 응급구조 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동의함.
- (대한의사협회)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면, 국민의 적극적인 응급구조 활동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로 확대해야 국민의 적극적인 응급구조 활동을 유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임.

### 3.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 명시(안 제48조의2)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 현행                                                                                                                                             | 개정안                                                                                         |
|------------------------------------------------------------------------------------------------------------------------------------------------|---------------------------------------------------------------------------------------------|
|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생략)                                                                                                                       |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 받은 경우 <u>정당한</u>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br>-----<br>-----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br><u>해당하는 정당한</u> -----<br>-----<br>-----. |
| <신설>                                                                                                                                           | 1. <u>응급실 병상 부족(수용 예정으로 인한 병상 부족을 포함한다)</u>                                                 |
| <신설>                                                                                                                                           | 2. <u>응급의료인력의 부족</u>                                                                        |
| <신설>                                                                                                                                           | 3. <u>협진 및 최종 치료과의 부재 또는 해당 의료인력의 부족</u>                                                    |
| <신설>                                                                                                                                           | 4. <u>필수 진단 장비 부족으로 응급의료 지연의 위험이 있는 경우</u>                                                  |
| <신설>                                                                                                                                           | 5. <u>입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 있어 중환자실 병상 및 입원 가능 병상이 부족한 경우(입원 예약으로 인한 병상 부족을 포함한다)</u>        |

|                    |                                                          |
|--------------------|----------------------------------------------------------|
| <u>&lt;신 설&gt;</u> | <u>6. 전력 및 통신 등의 장애로 검사, 처치 등 신속한 응급의료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u>   |
| <u>&lt;신 설&gt;</u> | <u>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등을 정하도록 위임받은(제48조의2제3항) 시행규칙에서도 정한 바가 없어 응급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병상이나 인력, 장비 부족 등으로 수용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응급환자를 수용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 각 호에서 정하려는 정당한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3호의 ‘협진 및 최종 치료과의 부재 또는 해당 의료인력의 부족’의 경우 응급환자의 최초 수용 시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이며, 1차 응급처치 후 해당 사유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제5호의 ‘입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 있어 중환자실 병상 및 입원 가능 병상이 부족한 경우(입원 예약으로 인한 병상 부족을 포함한다)’도 응급환자의 최초 수용은 응급실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응급처치 후 전원의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도록 한 현행 규정과 향후 응급의료 환경이 다각도로 변화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임.

나아가 ‘정당한 사유’는 예측불가능한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은 제한적 열거방식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시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이 불가피하게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사유 각각의 취지에 따라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화된 수용거부사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든 병원이 수용 곤란하나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수용할 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게 의료사고 면책을 규정하는 조항이 보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법무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완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같이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사태가 심각하게 문제되는 상황에서 환자 거부 사유를 개정안과 폭넓게 규정할 경우,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거부를 정당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중앙응급의료센터) 법률에 응급의료 거부·기피 관련 기준을 명시하는 경우 급변하는 응급의료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대한병원협회) 응급의료의 거부·기피 관련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응급의료인력 부족 등 상황에서 무리하게 응급환자를 수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자 피해 방지와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부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대한의사협회) 응급의료기관이 응급医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다 실효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임.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개정안과 같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응급医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게 되어 현재의 응급실 뱅뱅이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현행법 제48조의2제2항<sup>4)</sup>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규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음.

---

4)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医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
|--------------|
| 문 의 처        |
| 02)6788-5509 |